

#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희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6. 3. 6.

발 의 자: 박희연·김하영·이용주  
이광규·정재호·라도균  
이시훈 의원

## 1. 개정 이유

종로구는 국내외 방문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소상공인 업소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환경에 놓여 있으며, 특히 귀금속 업소 및 1인 운영 업소 등은 범죄에 취약한 실정임. 이에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상공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소상공인 업소 등에 대한 범죄예방에 필요 물품 지원(안 제5조의3제1항)
- 나. 소상공인 업소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의3제2항)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예산이 따르는 사항: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(안 제5조의3)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- 다. 입법 예고: 2026. 1. 2. ~ 1. 21.

**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범죄예방 지원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내용,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<u>&lt;신   설&gt;</u>	<p><u>제5조의3(범죄예방 지원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내용,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u></p>